



거 제 시

- ❖ 단체별 보고서
- ❖ 장학기금
- ❖ 옥외광고발전기금
- ❖ 남북교류협력기금
- ❖ 자활기금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 노인복지기금
- ❖ 양성평등기금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 ❖ 식품진흥기금
- ❖ 재난관리기금



거제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1 총 평

- 거제시 기금 총액은 2022회계연도 기준 2133억1,004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6억8,947만원 증가하였으며, 법정의무기금 118억8,304만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65억6,300만원을 제외한 성과분석 대상 기금의 총액은 148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1조3,600억5,100만원 중 1.09%에 해당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8개¹⁾ 기금의 사업비 편성비율은 전년대비 0.4%p 감소한 6.45%로 대체적으로 사업비 편성비율이 낮은 편으로 향후 개별 기금조성 목적 내에서 사업 분야 및 대상 확대 등 적극적인 사업 발굴 노력이 여전히 필요해 보임
- 8개 기금의 사업비 집행률은 전년대비 8.97%p가 감소한 78.22%로 저조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편성된 사업이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남북교류사업이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여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은 97.00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음
- 법정의무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4개²⁾ 기금의 타 회계 의존율은 54.50%이고,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98.04%로

1) 장학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자활기금.

2) 장학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높은 의존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2023년도에는 타 회계 전입금이 편성되어있지 않으므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현재 e호조 시스템을 사용으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정상적 경비 비율은 1.70%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의 경우 정상적 경비 미편성함
- 앞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 운용계획안 수립 시 기금조성 및 사업규모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미흡한 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개선 필요함

2 지표별 분석결과

자치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일반기타 특별) 의존율 (%)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	
							수입	지출
거제시	6.45	78.22	97.00	54.50	1.09	4	100	100

① 사업비 편성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거제시	(평균)	1,345	20,857	6.45
	장학기금	139	10,209	1.36
	옥외광고발전기금	740	985	75.13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538	18.59
	자활기금	25	825	3.03
	노인복지기금	20	2,046	0.98
	양성평등기금	30	2,369	1.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180	3,504	5.14
	식품진흥기금	111	381	29.13

② 사업비 집행률

-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추진한 사업이 사업지연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여 집행률이 낮게 평가되었음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거제시	(평균)	1,052	1,345	78.22
	장학기금	130	139	93.53
	옥외광고발전기금	508	740	68.65
	남북교류협력기금	60	100	60.00
	자활기금	23	25	92.00
	노인복지기금	20	20	100.00
	양성평등기금	30	30	1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171	180	95.00
	식품진흥기금	110	111	99.10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은 97.00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음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거제시	(평균)					97.00
	장학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남북교류협력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N	Y	Y	Y	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Y	Y	Y	9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④ 타회계 의존율

- 2020년도에 처음 운용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조성규모 달성을 위해 타회계 전입금이 편성되었지만, 2023년도부터는 전입금 편성을 안하기 때문에 타회계 의존율 개선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거제시	(계)	200	367	54.50
	장학기금	0	118	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204	98.04
	노인복지기금	0	21	0.00
	양성평등기금	0	24	0.00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전년도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0.18%p 감소한 1.09%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거제시	1,360,051	213,310	11,883	0	186,563	14,864	1.09

⑥ 기금 수 현황

- 기금 수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저 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노력 필요

(단위: 개)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거제시	10	5	0	1	0	4

⑦ 기금 수입 · 지출 관리의 적정성

- 현재 모든 기금에서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자치단체	기금	①번 (수입)	②번 (지출)
거제시	(평균)	100.00	100.00
	장학기금	Y	Y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남북교류협력기금	Y	Y
	자활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노인복지기금	Y	Y
	양성평등기금	Y	Y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⑦ 기타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편성 비율 10% 미만	장학기금	조례에 따라 장학기금이 운용되므로 사업비 편성 비율을 높이기 어려움. (현재 이율 3.45%) ※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3항 기금운용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장학기금으로 운용한다.
		노인복지기금	기금 조성액(20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사업비 편성 비율을 10% 이상 확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사업비 편성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양성평등기금	기금의 조성액(20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금으로 운용되는 기금 특성상 사업비 편성 비율을 10% 이상 확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사업비 편성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률 50% 미만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로 미집행 ※ 2023년 100% 집행예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	자활기금	기존: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9명(공무원4, 민간4, 시의원1) 변경: 2023.02.09. 민간위원 1명 추가 위촉(공무원4, 민간5, 시의원1)
타회계 의존율	타회계 의존율 50% 이상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상 존치기간이 도래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한 유지여부 결정(202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미편성)
경상적 경비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5%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 23년 본예산 경상적 경비 비율 5.6% - 24년도에는 5%이하 반영되도록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예정

• 경상적 경비 비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의 주민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외에는 경상적 경비 없음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거제시	계	28	1,647	1.70
	장학기금	0	166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508	0.00
	남북교류협력기금	0	60	0.00
	자활기금	0	23	0.00
	노인복지기금	0	20	0.00
	양성평등기금	0	30	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28	171	16.37
	식품진흥기금	0	110	0.00
	재난관리기금	0	559	0.00

장학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목적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시 출신 우수 인재 육성
- 설치 연도 : 1997년
- 사업 내용 : 시 출신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 재원 조성 : 기금의 이자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 기금 운용 : 기금의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으로 운용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093	82	166	△84	10,009	153	151	2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실 적	추진 내용
- 2022년 거제시 장학생 선발 : 100명 - 장학금 지급액 : 130백만원	-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20명) : 10백만원 - 대학교 입학 우수 장학생(21명) : 31.5백만원 -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29명) : 43.5백만원 - 재능나눔 장학생(30명) : 45백만원

- 지역 출신의 미래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70명을 선발하여 학업에 대한 보상 및 격려의 장학금 85백만원을 지급함(당초 76명을 계획하였으나 타장학금을 등록금을 60% 초과 하여 받은 대학 입학생 6명이 있어 지급 제외)
- 지역 출신 대학생 30명을 재능나눔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여름방학 동안 저소득 가구 자녀의 학습멘토로 활동하고 45백만원(1인당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대학생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은 물론 바른 품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22. 4. 14.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을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기금 사용범위를 확대 하였고 최근 금리상승으로 기금조성액 100억원의 이자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타회계 의존 없이 장학사업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7	137	77	139	130	9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2021년 거제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76.5백만원, 115명)	2021년 거제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36.5백만원, 88명)	77
'22년	2022년 거제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39백만원, 106명)	2022년 거제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30백만원, 100명)	9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장학생 선발유형을 4개 부문(고등 우수, 대학교 입학 우수, 대학교 성적 우수, 재능 나눔)으로 나누어 장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장학금 수혜 대상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함
- 재능 나눔 장학생을 선발하여 관내 저소득 가구의 중.고등학생과 학습멘토링을 진행, 학업능력 뿐만아니라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 대학생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는 학습동기부여, 진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멘토링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시 출신 우수 인재 육성 -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	거제시 장학생 선발 (고교 우수, 대입 우수, 대학교 성적 우수, 재능 나눔)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

- 장학생 선발 유형을 4개 부문으로 나누고 우리 시 출신 우수 인재를 고르게 지원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 없음	
	'21년	기금 수입 관리 시 기금관리정보시스템 (e호조시스템)을 통해 징수결의 하여야 함	내부 감사
	'22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장학사업	151백만원	장학 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삭감 등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위해 존치 필요	상
합 계	15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적립기금 조성액이 100억원에 도달함에 따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안정적인 장학사업 운용이 가능함

○ 2022. 1.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통합 관리를 위해 '거제시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30억원을 예탁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기금을 존치 필요
- 저소득층 학력 증대 등의 인재육성 지원사업으로의 장학사업 확장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10,184	100%	10,262	100%	10,176	100%
	전입금	195	1.9	32	0.3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9,812	96.4	10,008	97.5	10,058	98.8
	이자수입	177	1.7	190	1.9	82	0.8
	(사고)이월	-	-	32	0.3	36	0.4
지 출	합 계	10,184	100%	10,262	100%	10,176	100%
	비용자성사업비	145	1.4	168	1.6	166	1.6
	예탁금	-	-	-	-	3,000	29.5
	예치금	10,008	98.3	10,058	98.0	7,010	68.9
	(사고)이월	32	0.3	36	0.4	-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연도 : 2011. 7. 8.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76	479	510	△31	545	234	278	44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 55,671건
- 옥외광고정비사업 일반운영비 : 36,028천원
-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공사 사업비 : 78,653천원
- 옥포성안로 간판개선 사업비 : 393,754천원(이월: 177,518천원)

-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물 게시대 시설을 점검·교체함

- 옥포성안로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노후·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상업거리 조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시정홍보 목적으로 게첨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0	174	97	740	508	69

※ 2022년 기금 집행실적 감소 원인: 사고이월 예산 178백만원 미반영

○ 사고이월 내역

가. 사무관리비

- 2022년 옥포성안로 간판개선사업 간판 제작 및 설치 건설기술 지도 용역: 2,046,000원

나. 시설비

- 2022년 옥포성안로 간판개선사업 간판 제작 및 설치 : 124,829,440원
- 금곡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 12,573,000원
- 하청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 12,800,000원
-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 14,326,000원
- 옥포대첩로2길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 10,944,000원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정비사업 기타 운영비 → 36백만원 ○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사업 → 78백만원 ○ 옥외광고사업 지원 보조금 → 46백만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 → 2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정비사업 기타 운영비 → 32백만원 ○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사업 → 77백만원 ○ 옥외광고사업 지원 보조금 → 45백만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 → 20백만원 	97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정비사업 기타 운영비 → 37백만원 ○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사업 → 103백만원 ○ 옥포성안로 간판개선사업 → 6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정비사업 기타 운영비 → 35백만원 ○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사업 → 79백만원 ○ 옥포성안로 간판개선사업 → 394백만원(178백만원 이월) 	6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후 지정 게시대 등의 정비로 불법 광고물 방지 및 다양한 홍보 기회 제공
- 불법 광고물의 신속한 정비 및 행정처분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 옥외광고업자 교육·지원 -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불법 옥외광고물 상시 정비·단속을 통하여 대량으로 부착되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 게첨 사례 대폭 감소
- 관광지 경관을 해치는 불법 지주간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훼손 방지, 지역 상인과 상생 도모
- 노후 게시시설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 유지, 안전사고 예방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278백만원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 설치 기금이며, 도시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존치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조성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불법 광고물 정비, 간판 정비, 지정 게시대 확충 및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419	100%	750	100%	1,054	100%
	전입금	30	7.5	-	-	300	28
	보조금	-	-	46	6	-	-
	예치금회수	308	73.5	297	39	576	55
	이자수입	5	1	4	1	5	1
	기타수입	76	18	403	54	173	16
지 출	합 계	419	100%	750	100%	1,054	100%
	비용자성사업비	122	29.1	174	23	508 (이월: 178)	65
	예치금	297	70.9	576	77	367	34
	기타지출	-	-	-	-	1	1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 설치목적 :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 추진
- 설치년도 : 2020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45	204	60	144	489	6	40	△34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 5개 사업(단체) 선정, 60,000천원 지원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로 북측과 교류가 단절된 이후 사실상 남북교류협력사업(대북지원)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성과가 없는 점이 아쉬움
-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사회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음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장기간의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기금 편성의 당초 목적인 남북 교류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별도의 재원이 없어 시 재정운용에 부담임
- 다만, 향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으로 개선될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함
- 기금의 존치기한이 2023. 12. 31.이므로 존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29	29	100	60	6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60백만원) ○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 (40백만원)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없음 ○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 4개사업 선정, 29백만원 지원	29
'22년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40백만원) ○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 (60백만원)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없음 ○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 5개사업 선정, 60백만원 지원	6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국경 봉쇄, 코로나19 상황 아래 장기간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하여 중단되면서 성과가 없어 아쉬운 점이 있음
- 평화통일 교육사업은 지역 내 관련 단체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해 문화예술행사, 강연, 토론회 등 5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공감대 조성에 기여한 효과가 있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 통일 의식 증진사업 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	중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사실상 추진 불가하여 성과가 없었으나,
- 평화통일교육사업은 정상 추진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 없음	
	'21년	기금수입에 대한 징수결의 소홀	내부감사
	'22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사업비 집행률 50% 미만, 타회계 의존율 50% 이상으로 개선 권고 → 실적이 없었던 남북교류협력사업 편성비율을 낮추고, 평화통일교육사업을 높여 사업비 집행률을 60%로 개선	
기 타		2022회계연도 거제시 결산검사 결과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자체 역할에 한계가 있고, 평화통일교육사업은 단체 간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으니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일반회계 등 다각적인 검토 권고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 필요성 등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평화통일교육사업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행단체가 제한적으로 차별성이 부족함
- 그러나 안정적인 기금예산으로 많은 시민 대상 교육·문화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으므로 존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평화통일교육사업	40백만원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존치여부 검토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유사성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평화통일 단체지원	12백만원	
타 기금	유사성 없음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20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 예치금회수 345백만원, '22년 시비 전입금 수입 200백만원, 이자수입 4백만원으로 충당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기금 위원회를 통해 내부적인 의견 취합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200 / 100%		374 / 100%		549 / 100%	
	전입금	200	100	200	53	200	36
	예치금회수	-	-	172	46	345	63
	이자수입	-	-	2	1	4	1
지 출	합 계	200 / 100%		374 / 100%		549 / 100%	
	비용자성사업비	28	14	29	8	60	11
	예치금	172	86	345	92	489	89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원활한 자활사업 추진과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 지원 도모
- 설치연도 및 조례제정 : 2001. 12. 27.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95	28	23	5	800	25	30	△5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방한복 지원(56명) : 8백만원
- 희망도시락 사업단 공간확충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 15백만원
(면적 : 86㎡, 인테리어공사 : 10백만원, 전기공사 : 5백만원)

○ 잘된 점

- 도시락사업단의 전용공간 확보로 인한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모사업에 응모 사업비 15백만원 확보하여 예산 절감하였음
- 또한 지역자활사업에 참여중인 종사자에 대해 겨울철 방한복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 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음

○ 미흡한 점

- 지역경기 침체로 자활기업의 설치가 없어 자활기금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발생하지 않음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

- 자활사업 수익금, 예금이자로 조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육성,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용자 사업 수행 등 특정목적 달성하기 위해 기금형태로 계속 존치하여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6	42	49	30	23	7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형성 위탁사업 3백만원 ○ 복지증진사업 13백만원 ○ 자활센터 지원 40백만원 ○ 융자사업 30백만원,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형성 위탁사업 3백만원 ○ 복지증진사업 10백만원 ○ 자활센터 장비 지원 29백만원 ○ 융자사업 : 없음 	48.8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증진사업 15백만원 ○ 자활센터 지원 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증진사업 15백만원 ○ 자활센터 지원 8백만원 	76.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대비 100% 달성 하였으나,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한 종사자 방한복 지원비는 사업참여자가 적어 53.3% 달성
-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기금조성 목표액이 10억 원으로 목표액 도달 시까지는 원금손실 예방과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사업 추진 자금 지원 ○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자립, 자활복지 증진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증진사업 추진 ○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 	76.6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자활사업단 참여자의 작업장 환경개선으로 전용공간 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함
- 자활사업단 참여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방한복을 지원함으로써 자아감 고취 및 근로능력 향상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	2023년도 조치완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자활센터 기능보강	30백만원	자활센터 기능보강 지원을 통한 근무자 및 참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상
합 계	3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재원은 시 출연금 350백만원을 포함 총예치금 800백만원으로 수입은 연도별 자활사업 매출적립금과 이자 수입으로 구성됨
-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에 근거하여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억 원이며 지속적인 자활사업 육성으로 재원의 추가확보 필요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공간을 확충하고 지원하여 탈수급을 유도
- 기 실시한 자활사업의 매출 증대와 매년 증가하는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수요에 맞게 새로운 사업단 육성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838 / 100%		837 / 100%		823 / 100%	
	예치금회수	802	95.7	799	95.5	796	96.7
	이자수입	23	2.7	1	0.1	22	2.7
	기타수입	13	1.6	37	4.4	5	0.6
지 출	합 계	838 / 100%		837 / 100%		823 / 100%	
	비용자성사업비	39	4.7	42	5	23	2.7
	예치금	799	95.3	795	95	800	9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 설치연도 : 202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7,439	149,521	397	149,124	186,563	5,051	51,200	△46,149	

II.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설치함

- (통합계정) 현재 편성하고 남은 여유재원을 예탁받아 운영하며, 국민 주택사업 특별회계 7,550백만원, 지하수특별회계 493백만원, 폐기물 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6,062백만원, 장학기금 3,000백만원, 노인 복지기금 2,000백만원 및 발생한 이자분 포함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19,126백만원 조성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관리하고 있음
- (재정안정화계정) 2022년도 보통교부세 증가로 143,000백만원 적립 하여 12월말 기준 167,437백만원을 관리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 및 지방채 상환을 통해 여유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개별기금과의 중복이나 유사성이 없으며, 경기 불확실성 및 대규모 사업 추진 등 지방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금 으로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 해당 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 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여유재원의 적립으로 당초 및 추정 예산 편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바탕재원 및 지방채 상환 등 계획적·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으로 주민의 후생 증진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6조 - 거제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자원 적립 및 사용요건 발생 시 일반회계 전출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여유재원의 적립을 통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해당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을 적립하는 적립성 기금으로 적정하게 조성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장치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연도에는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연도에는 적립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및 지방채 상환을 통해 재정여건을 건전하게 운용할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61,176	100%	186,961	100%
	전입금	47,329	77	143,000	76
	예치금회수	-	-	37,439	20
	예수금	13,710	22	5,445	3
	이자수입	137	1	777	1
지 출	합 계	61,176	100%	186,961	100%
	예치금	37,439	61	186,563	99
	예수금 원리금상환	-	-	398	1
	기타지출	23,737	39	-	-

※ 2021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설치목적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
- 설치년도 : 1997. 7. 28.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025	21	20	1	2,026	20	20	0	

II. 분석결과

1. 총 평

- 지역 어르신(노인)들의 건강한 취미생활 및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320개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각종 어르신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데 20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노인복지기금은 최초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서 운영하던 노인회 육성자립기금을 기반으로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연차별 확대되어 2022년말 기준 2,026백만원을 조성, 목표액 20억원을 초과하여 달성

-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체 노인인구 대비 저조한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자수입 증가 등 재원 확대 방향 모색이 필요
- 이자수입 증가 및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기간이 만료된 예산을 우선하여 예탁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노인복지기금 2,000백만원 전액을 통합재정 안전화기금으로 운용
-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와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노력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2	22	100	20	2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사업 (22백만원, 1개소)	○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사업 (22백만원, 1개소)	100
'22년	○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사업 (20백만원, 1개소)	○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사업 (20백만원, 1개소)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인회 조직활성화 사업을 통한 쾌적한 노인여가복지 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거제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복지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분회 및 우수경로당 시상 ○ 경로당 현판제작 지원 ○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 경로당 임원교육 및 간담회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따른 목적사업 시행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 낙후되어 있는 경로당의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없음	
	'21년	1.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개정 소홀 2. 기금수입에 대한 징수결의 소홀	조치완료
	'22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천원)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우수분회 우수경로당 시상	2,000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사업비 지원이 제한된 재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매년 노인복지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 시행이 필요하여 기금사업으로 유지함이 필요함	상
② 도단위 행사 지원	3,500		상
③ 노인회 조직활성화 지원	4,000		상
④ 경로당 순회 교육 및 간담회	2,000		상
⑤ 우수지도자 선진지 견학	4,500		상
⑥ 스포츠댄스교실	1,000		상
⑦ 장수어르신 행복 나눔 위안잔치 및 장수상 시상	3,000		상
합 계	20,0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22년도 이자수입 26,526,732원을 조성 재원으로 2022. 12. 31.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2,000,000,000원, 보통예탁금 26,526,732원을
합하여 총 2,026,526,732원을 조성

- 기금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기금 존치와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필요
- 노인복지기금을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2,040	100%	2,047	100%	2,047	100%
	전입금	27	1.3	0	0	0	0
	예치금회수	1,979	97.0	2,025	99.0	2,026	99.0
	이자수입	34	1.7	22	1.0	21	1.0
지 출	합 계	2,040	100%	2,047	100%	2,047	100%
	비용자성사업비	15	0.7	22	1.0	20	1.0
	예탁금	-	-	-	-	2,000	98.0
	예치금	2,025	99.3	2,025	99.0	27	1.0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9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촉진 및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 설치연도 : 1998년
- 사업내용 :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346	24	30	△6	2,340	37	30	7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연 번	기관(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계	8개 사업		30,000
1	행복을주는사람	행복한 윈더우먼 & 행복한 GEOJ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의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주말틈새 휴일을 이용한 야외활동 동행 서비스 지원 ☛ 한부모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 관련 가족 20명, 총 4회, 참여인원 190명(남 86, 여 104) 	3,071
2	함께하는 우리마을	위로하는 양성평등 "토닥토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성불평등 문제를 점검하고 대처 방안 등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개인권리 	3,791

연번	기관(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회복 및 인식변화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원 15명(여 15) 	
3	한국휘트니스협회 거제지부	스우파 가족운동교실: 스스로 우리 가족의 파워(체력)을 향상 시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정립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사전 건강상태 확인, 키플운동(필라테스, 댄스스포츠, 라인 댄스) ☞ 55명(남 13, 여 42) / 탈북민 및 일반,장애인 대상 	3,754
4	능포동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우리 가족 사랑한 D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쁜 일상 속에서 방학 등을 이용하여 가족 및 지역이 함께 교류하는 일.가정 양립 생활 문화정착을 통해 가족 친화 환경 조성사업 추진 : 우리집 문패 제작, 한가위 음식 조리 및 나눔 ☞ 총 9회, 참여인원 194명(남 70, 여 124) 	2,621
5	한국오카리나 팬플룻총연합 거제지부	가족, 음악 꽃이 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부모 와 (손)자녀가 함께 새로운 악기(칼림바, 텡드럼) 연주 도전 및 취미 공유로 가족간 유대감 형성으로 가족친화 문화 조성 ☞ 15팀, 27명(남 3, 여 24) 	3,791
6	(사)거제시 여성단체협의회	함께 만들어가요“행복한 우리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TI 검사를 통해 양육자의 정책성을 발견하고 가족구성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고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 ☞ 3회, 108명(여 108) 	3,791
7	(사)거제가정 상담센터	동(동등하고) 행(행복한) 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차별적 인식 개선 및 성평등한 문화 확산 추진 - 양성평등인식 설문조사 및 양성평등교육(29회), 캠페인 29회 ☞ 교육, 캠페인 각 29회, 523명(남 192, 여 331) 	4,181
8	거제YWCA 성폭력상담소	성인권을 THE + 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성역할의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변화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상호 경계 존중 문화 정착 -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28회) ☞ 교육 28회, 599명(남166,여 433) 	5,000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 여성의 권익 뿐만 아니라 성인식이 고착화 된 노년층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하였으며, 각 사업마다 남녀의 고른 참여 유도로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였음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대상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업 발굴과 신규 단체 참여 기회 제공 및 기금사업 선정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기금 사업 내실화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구현,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의식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역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
- 기금의 존재만으로도 양성평등정책의 관심을 유도하는 상징성이 있으며, 취약 계층 등 선별적 대상에 대한 보충적 복지 지원의 의미가 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성격의 사업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30	100	30	3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사회 참여 등 8개사업(30백만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사회 참여 등 8개사업(30백만원)	100
'22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6개사업,20,819백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6개사업,20,819백만원)	100
	양성평등인식개선사업 (2개사업,9,181백만원)	양성평등인식개선사업 (2개사업,9,181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성 인식이 고착화된 노년층 대상으로 인권 보호 및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건강하고 행복 가족 구현을 위한 가족친화적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9조	양성평등 촉진 및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	125개 사업 / 558백만원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25개 사업에 558백만원을 지원함
- 기금을 통해 관내 민간사회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힘써왔으며,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양성 평등 문화 조성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없음	
	'21년	기금수입에 대한 징수결의 소홀	내부감사
	'22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사업비 편성 비율 10% 미만 - 기금의 조성액(20억원)에서 발생 되는 이자 수입금으로 운용되는 기금 특성상 사업비 편성 비율을 10% 이상 확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사업비 편성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3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추구 하는 지역사회 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주체적 활동을 통한 양성 평등문화 확산에 기여 • 기금의 존재 자체가 양성 평등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지속적으로 존치되어야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조성은 2013년 기금목표액 20억 달성 이후 이자 수입이 주된 재원 조달 방법이며, 지출은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 설치 목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재원 조성의 적정성이 우수한 편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공모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 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을 비롯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지도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노력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2,367	100%	2,376	100%	2,370	100%
	예치금회수	2,325	98.2	2,342	98.6	2,346	98.9
	이자수입	42	1.8	34	1.4	24	1.0
지 출	합 계	2,367	100%	2,376	100%	2,370	100%
	비용자성사업비	25	1.1	30	1.3	30	1.3
	예치금	2,342	98.9	2,346	98.7	2,340	98.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설치목적 :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 설치년도 : 2004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813	690	171	519	3,332	689	1,037	△348	

II. 분석결과

1. 총 평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기금으로 2022년도에는 수입690백만원 중 171백만원을 마을주거 환경개선 등에 집행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음
- 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종료되는 연도까지(조례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56	655	99	190	171	9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21년	마을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50백만원	○ 한내마을 구거정비 및 농로 개설 공사: 50백만원	100
	주민복지증진사업: 515백만원	○ 한내마을 김치냉장고 구입: 206백만원 ○ 석포마을 김치냉장고 및 냉난방기 구입: 309백만원	100
	주민지원협의체 및 마을 지원: 91백만원	○ TV 유선비: 12백만원 ○ 마을 공동 전기·전화·상하수도요금: 6백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 운영 등: 72백만원	99
‘22년	마을주거환경개선 사업: 50백만원	○ 한내마을 마을회관 개선 및 농로공사: 50백만원 ○ 석포마을 포충기 구입, 테크설치: 50백만원	100
	주민지원협의체 및 마을 지원: 71백만원	○ TV 유선비: 12백만원 ○ 마을 공동 전기·전화·상하수도요금: 8백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 운영 등: 51백만원	90
	주민지원협의체 및 마을 지원: 91백만원	○ TV 유선비: 12백만원 ○ 마을 공동 전기·전화·상하수도요금: 6백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 운영 등: 72백만원	9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소득증대 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주민감시원을 채용하여 자원순환시설 민간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폐기물처리 과정 신뢰 형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조례 제11조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복지증진 기여 ○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 소득증대사업 ○ 환경개선사업 (복지증진사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으로 활기찬 분위기 조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분	지적내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 지출결의서 품의 유형 오류: 일시사역 노동자도 인건비지출결의서 사용 - 민간 경상사업보조 관리업무 소홀: 자본적 경비로 사용 불가	감사법무실 (내부감사)
	'21년 - 기금수입에 대한 징수결의 소홀 :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에 세입 징수결의 필요	
	'22년 - 경상사업보조 예산액 5% 이내 편성 필요	
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 - 경상적 경비 비율 5% 이상 편성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마을주거환경개선 의 10건	190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반드시 유 지되어야 하는 사업임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조성으로 기금 설치목적 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함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의 10%,
음식물류 납입필증 판매대금의 5%
-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의 전입금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① 향후조치 계획

-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이며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추진

○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기금의 투명성 및 마을별 형평성 제고

② 건의사항 :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3,191	100%	3,468	100%	3,503	100%
	전입금	646	20.2	685	19.7	657	18.8
	예치금회수	2,500	78.4	2,747	79.2	2,813	80.3
	이자수입	43	1.3	32	0.9	33	0.9
	기타수입	2	0.1	2	0.1	-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	2	0.1	-	-
지 출	합 계	3,191	100%	3,468	100%	3,503	100%
	비용자성사업비	417	13.1	598	17.2	143	4.1
	인력운영비	27	0.8	57	1.7	28	0.8
	예치금	2,747	86.1	2,813	81.1	3,332	95.1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 설치연도 : 2000. 12. 23.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55	148	119	29	284	126	153	△27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등급지정업소 등 지원 28,180천원
- 식품접객업소 살균소독제 지원 2,790개소 55,000천원
- 식품 수거 검사 및 식중독예방 홍보 활동 14,608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550천원
- 식품접객업소 위탁교육비 지원 5,000천원

○ 잘된 점

-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책 참여를 유도하고 68제곱미터 이하 식품접객업소 2,790개소에

살균소독제 지원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예방으로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

-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지원, 유통 중인 식품 수거 검사 및 식중독 예방 홍보, 하절기 해안지역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교육활동 등을 통하여 식품의 위해로부터 소비자 보호 및 영업주의 위생 의식 향상 도모

○ 발전방안

-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위생등급지정 업소 지원 및 지정 확대 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강구

○ 향후 조치계획

- 일반음식점 노후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위생등급지정업소 지원 확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통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위생 환경 개선 도모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 재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 유효성은 여전히 높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5	100	87	111	110	9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수거 검사비 (4,800천원, 12회)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위생등급업소 등 지원 (20,000천원, 150개소) ○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9,200천원, 165개소) ○ 식품위생 정보공유 지원 (1,716천원, 12회) ○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람 전광판 지원 (1,920천원, 12개소) ○ 해안지역 대상 찾아가는 식중독 안전 교육물품 지원 (5,000천원, 50개소) ○ 식중독예방컨설팅 사업 (4,000천원, 100개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7,950천원, 159회) ○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66㎡ 이상 업소 (55,000천원, 2,787개소) ○ 식품접객업소 위탁교육비 지원 (5,000천원,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수거 검사비 (4,750천원, 20회)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위생등급업소 등 지원 (12,716천원, 150개소) ○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 (9,200천원, 165개소) ○ 식품위생 정보공유 지원 (1,716천원, 12회) ○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람 전광판 지원 (1,920천원, 12개소) ○ 해안지역 대상 찾아가는 식중독 안전 교육물품 지원 (5,240천원, 50개소) ○ 식중독예방컨설팅 사업 (1,672천원, 103개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7,950천원, 159회) ○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66㎡이상 업소 (55,077천원, 2,787개소) 	87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수거 검사비(4,800천원, 12회) ○ 음식문화개선사업(10,000천원, 224개소) ○ 위생등급업소 지원(10,000천원, 5,000개소) ○ 수저위생포장지 지원(9,900천원, 167개소) ○ 식품위생 정보공유 (1,716천원, 12회) ○ 식중독지수 알람 전광판 지원 사업 (1,920천원, 12개소) ○ 해안지역 대상 찾아가는 식중독 안전 교육(3,000천원, 50개소) ○ 식중독예방컨설팅(4,000천원, 100개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5,550천원, 3회) ○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66㎡이상 업소 (55,000천원, 2,790개소) ○ 식품접객업소 위탁교육비 지원 (5,000천원,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수거 검사비 (6,517천원, 21회) ○ 음식문화개선사업(10,000천원, 224개소) ○ 위생등급업소 지원(8,280천원, 5,000개소) ○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 (9,900천원, 167개소) ○ 식품위생 정보공유 지원 (1,716천원, 12회) ○ 식중독지수 알람 전광판 지원 사업 (2,040천원, 12개소) ○ 해안지역 대상 찾아가는 식중독 안전 교육 (3,000천원, 50개소) ○ 식중독예방컨설팅(1,335천원, 100개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5,550천원, 3회) ○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66㎡이상 업소 (55,000천원, 2,790개소) ○ 식품접객업소 위탁교육비 지원 (5,000천원, 1회) 	99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위생 및 시민건강 증진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등급지정 업소 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식품수거 검사비 지원 ·식중독예방 컨설팅 지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지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일반예산사업으로 시행하지 못한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식중독 예방 활동 등 식품안전 사업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어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 효과는 매우 높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없음	
	'21년	기금수입에 대한 징수결의 소홀	내부감사
	'22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고유목적사업	145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위생 등급지정 업소 지원, 식품 수거 검사, 식중독예방 컨설팅 등 기금 본래의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 사업은 반드시 필요함	상
합 계	14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예치금회수 : 255,062천원

○ 징수교부금수입 : 58,206천원

○ 이자수입 : 3,042천원

○ 시도비보조금 등 : 87,086천원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위반행위의 과징금으로 조성되고 있음
- 인건비 상승과 식자재 상승, 인구감소 등에 따른 외식인구 감소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어 기금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식품접객업소의 경쟁력 향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주방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영업주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금을 적극 운용해 나가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245	100%	366	100%	403	100%
	보조금	48	20	91	24.9	87	21.6
	예치금회수	128	52	180	49.2	255	63.3
	이자수입	2	1	2	0.5	3	0.7
	기타수입	67	27	93	25.4	58	14.4
지 출	합 계	245	100%	366	100%	403	100%
	비용자성사업비	57	23	100	27.3	110	27.3
	예치금	180	74	255	69.7	284	70.5
	기타지출	8	3	11	3	9	2.2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 설치목적 :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사업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 설치년도 : 1997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931	1,671	681	990	6,921	1,947	1,784	163	

II. 분석결과

1. 총 평

- 거제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등 기여
 - 배수로, 하천, 도로 등 재해위험지 사전예방을 위한 보수 및 정비 : 486백만원
 - 재난예·경보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을재난방송시스템 불청지역 보강 사업 및 노후 재난예경보시설 교체 등 : 69백만원
 - 태풍 ‘힌남노’ 및 집중호우, 폭염 등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 126백만원

- 최근 태풍, 집중호우, 폭염, 지진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빈번한 기상 이변 및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재난의 다양화·대형화로 인하여 재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법정 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의 존치는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8	1,217	254.6	678	681	100.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28백만원 ◦ 재난 피해시설 복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임차료 : 400백만원 ◦ 도비보조금반환금 : 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19백만원 ◦ 재난 피해시설 복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임차료 : 288백만원 - 예방 및 복구 공사 : 804백만원 ◦ 도비보조금반환금 : 106백만원 	254.6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20백만원 ◦ 재난 피해시설 복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임차료 : 508백만원 ◦ 도비보조금반환금 : 1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240백만원 ◦ 재난 피해시설 복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임차료 : 126백만원 - 예방 및 복구 공사 : 193백만원 ◦ 도비보조금반환금 : 122백만원 	100.4

※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 8,943백만원 [계획대비(9,336백만원) 95.8% 집행]

- 소상공인 등 긴급지원금 지원 8,887백만원, 코로나19 안심콜 관련 지원 56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예방과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기금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 중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 재난·재해 사전예방 ○ 신속한 응급복구	○ 재난 및 안전관리 예방활동 ○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 재난의 원인분석 등을 위한 조사연구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재해피해 최소화에 기여

○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20년	○ 재난관리기금 변경 및 사용 부적정 ○ 내용 : 주민숙원사업, 시책사업, 억 단위 대규모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 시행하고, 예치금은 가급적 변경 자제	거제시의회 결산검사
	2021년	해당없음	
	2022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 등	478백만원	재난사전대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임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액으로 재원을 조성하므로 기금 설치 목적 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의무 설치 기금이며, 각종 재난대비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24,558	/100%	16,091	/100%	7,602	/100%
	전입금	11,574	47.1	10,341	64.3	1,436	18.9
	보조금	6,841	27.9	681	4.2	154	2
	예치금회수	6,091	24.8	5,008	31.1	5,912 (이월: 19)	78
	이자수입	52	0.2	61	0.4	81	1.1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24,558	/100%	16,091	/100%	7,602	/100%
	비용자성사업비	18,779	76.5	10,054	62.5	559 (이월: 37)	7.4
	인력운영비	110	0.4	-	-	-	-
	기본경비	-	-	-	-	-	-
	예치금	5,008	20.4	5,931	36.9	6,884	91
	기타지출	661	2.7	106	0.6	122	1.6